

마포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5조에 의거 복지동행국장 전결을 확인함

문서번호	복지정책과-373
문서공개	대국민 공개
결재일자	2026. 1. 6.



주무관	지역복지팀장	복지정책과장	복지동행국장
김아림	윤승현	김은숙	2026. 1. 6. 김경숙
협 조			

새로운 마포 더좋은 마포

2026년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 추진계획

2026. 1.

복지동행국
[복지정책과]

2026년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계획

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특별생계비·공공요금체납분을 적시에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

I

지원근거

□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 5호

II

추진개요

□ 사업기간: 2026. 1. 1. ~ 12. 31.

□ 사업예산: 236,832천원 [구비 100%]

□ 지원대상: 마포구 저소득 주민 중 갑작스러운 질병, 사고 및 실직 등의 사유로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자

□ 지원기준

○ 소득기준: 기준중위소득 **70% 이내**

(단위: 원)

구 분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	7인
2026년 기준 중위소득	2,564,238	4,199,292	5,359,036	6,494,738	7,556,719	8,555,952	9,515,150
기준 중위소득 70%	1,794,967	2,939,504	3,751,325	4,546,317	5,289,703	5,989,166	6,660,605

※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: 1인 증가시마다 959,198원씩 증가

○ 재산기준: **135,000천원 이하**

- 기존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, 일반재산과 합산하여 산정
- 자동차가 있는 경우,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(지침) 기준 준용

Ⅲ

세부추진계획

□ 지원원칙

○ 지원시기

- 특별생계비: 연 1회 지원
- 공공요금 체납분: 2년 1회 지원

※ 최대 지원액 미만 지원시, 추후 차액 지원 불가

○ 사안이 긴급할 시 특별생계비와 공공요금 체납분 중복지원 가능

□ 지원내용

○ 특별생계비: 2026년 기준중위소득 15%에 해당하는 금액

(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251, 긴급생계급여액 기준)

(단위: 원)

가구규모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	7인
지 급 액	384,000	629,000	803,000	974,000	1,133,000	1,283,000	1,427,000

※ 8인 이상 가구의 특별생계비 지급기준: 1인 증가시마다 143,000원 추가지급

○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: 공단 및 공공요금 납부전용계좌로 지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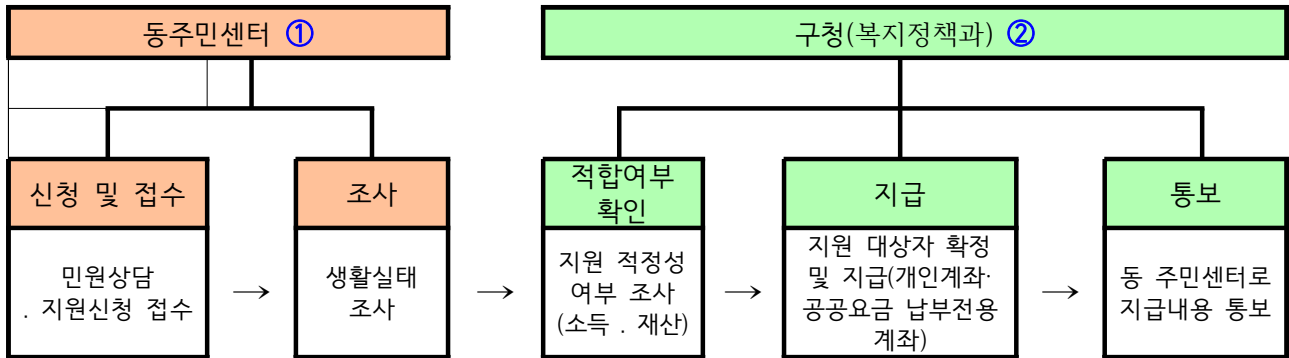
지원내용	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
금액	최대 500,000원
세부기준	- 건강보험료 ○ 평균 6개월 이상 체납하여 건강보험증 사용이 어려운 가구 - 공공요금: 전기, 수도, 가스요금 ○ 전기요금지원 제외대상: 비주택용, 공업용, 소매상 용도의 전기 ※ 아파트 관리비는 공공요금에 해당하지 않음

□ 2025년 집행현황

○ 집행실적: 617가구 총 236,822천원 지원

구 분	지원가구	지원금액(천원)	집행률
총 계	617	236,822	
특별생계보호	생계비	499	99%
	공공요금체납	118	

□ 추진절차



① 동 주민센터

- 신청인 내방상담 및 생활실태 조사
- 사회보장급여제공(변경)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(통장사본, 진료비 영수증, 공공요금 체납통지서, 진단서 등)징구
- 차세대 행복e음 지자체 서비스 신청 및 공문발송

② 구청 (복지정책과)

- 지원적정성 여부 판단 후 대상자 확정 및 보장결정
- 지급일: 매주 금요일(수요일 오전 조사완료 대상까지)
- 지급방법
 - 특별생계비: 대상자 계좌로 이체
 -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체납분: 공공요금 납부전용계좌로 이체
- 해당 동 주민센터로 지급 통보

Ⅳ

행정사항

○ 동 주민센터

- 초기상담시 신청자 생활실태 조사 철저
- 직능단체회의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대상 가구 발굴

○ 구청(복지정책과)

- 적정 여부 신속 검토 후 적기에 지원. 끝.

